

의안번호	2218961
의 퇴 인	안도걸 의원
회 답 일	2026. 6. 12.
추계번호	26A260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1호 (정의)	○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확대 －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병영시설에서 국방시설로 확대함	의무규정
2	안 제4조제5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총민간투자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에 서 정한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건설형 민자사업방식) 도입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 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송전사업자 포함) 에 귀속함	의무규정
3	안 제25조의2 (건설형 민자사업 등 의총민간투자비 지급)	○ 건설형 민자사업 등의 총민간투자비 지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송전사업자 포함)는 건설 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어 해당 사회기 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 전된 경우 실시협약에서 결정된 사업수익률을 적 용한 총민간투자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함 － 총민간투자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4	안 제30조제1항 (산업기반신용보증 기금의 설치 및 관리)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목적 확대 －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대사업 자금의 원활한 조달” 포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제1호(정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조제5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3	안 제25조의2 (건설형 민자사업 등의 총민간투자비 지급)	
4	안 제30조제1항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건설형 민자사업(BT: 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다음의 개정 내용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병영시설’에서 ‘국방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건설형 민자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됨에 따라 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
 - 또한, 개정안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하는 경우 기금의 보증공급 규모가 확대되어 기금조성을 위한 정부출연금규모가 증가하거나 대위변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라 확대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건수와 유형, 사업별 총사업비 및 연차별 사업계획 등을 현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서 신규 도입할 건설형 민자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상 사업수익률을 기준으로 총민간투자비를 산출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지급하고, 총 민간투자비의 지급기준·지급방법·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움
 - 그리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 확대에 따른 정부출연 증가 여부 및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 참고로 1994~2025년간 민간투자 사업은 910개사업[수익형(이하 ‘BTO’) 289개, 임대형(이하 ‘BTL’) 620개, 혼합형 1개]에 159.1조원(BTO: 117.6조원, BTL: 38.7조원, 혼합형 2.8조원)이 추진(실시협약체결 기준)된 것으로 나타남

[표 1] 민간투자 사업 추진 단계별 사업수 및 투자규모: 1994~2025년

구분	사업수(개)					투자규모(조원)			
	합계	준비중	시공중	운영중	종료	합계	민간 투자비	건설 보조금	토지 보상비
BTO	289	13	22	189	65	117.6	73.6	26.5	17.5
BTL	620	23	42	537	18	38.7	37.9	0.8	0.03
혼합형	1	1	—	—	—	2.8	1.6	1.2	0.07
합계	910	37	64	726	83	159.1	113.1	28.5	17.6

자료: 기획예산처, 「2025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2026. 5.

- 그리고 2025년에는 민간투자 사업 76개사업[(BTO: 30개, BTL 45개, 혼합형 1개)에 대해 4.7조원(BTO: 3.6조원, BTL: 0.9조원, 혼합형 0.1조원)의 투자비가 집행되었음

[표 2] 2025년 민간투자 사업 집행실적

구분	사업수(개)					투자규모(조원)			
	합계	준비중	시공중	운영중	종료	합계	민간 투자비	건설 보조금	토지 보상비
BTO	30	5	21	4	—	3.6	1.8	0.8	1.0
BTL	45	2	25	18	—	0.9	0.9	0.03	—
혼합형	1	1	—	—	—	0.1	0.07	0.01	0.04
합계	76	8	46	22	—	4.7	2.8	0.9	1.0

자료: 기획예산처, 「2025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2026. 5.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653	choi1009@assembly.go.kr